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947 재물손괴
피 고 인 김○○ (000000-00000000), 무직
주거 ○○ ○○ ○○○ 00, 000동 000호 (○○,○○○○)
등록기준지 ○○ ○○ ○○○ 000
검 사 김○○(기소), 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성○○(국선)
판 결 선 고 2019. 12.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직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9. 15:00경에서 17:00경 사이 ○○ ○○ ○○○ 000 ‘○○○○’
내에 세입자인 피해자 김00(남, 00세)와 보증금 반환 문제로 위 가게에 들어가 가게
안에 설치되어 있던 블라인드를 손으로 잡아 당겨 시가 385,000원 상당(다만, 설치 당

시 설치 공임을 포함한 가액임)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 ○○○의 각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촬영한 사진 제출에 대해, 피해 견적서 제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 _____